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진술에 대한 경고·징계요구 및 해임건의〉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99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기형 · 복기왕 · 박수현 · 정진욱 · 부승찬 · 김남근
윤건영 · 이광희 · 정성호 · 박희승 · 양부남 · 이병진
송재봉 · 위성락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 의안번호 : 319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측 관계자 등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본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의결로써 경고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2조의4(허위진술에 대한 징계 등) 누구든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본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현행법 제121조¹⁾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등”이라 함)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이 제122조²⁾에 따라 정부에 서면질문

1)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한 경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법률안·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정부측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무위원등의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답변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임³⁾.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등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 또는 서면답변 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가 행한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국무위원등 정부측 관계자가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로써 경고, 징계요구 또는 해임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발언·답변에 대한 책임

2)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3)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7, p.576

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권 및 예산심의·확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누구든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 상기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본회의의 경우 대체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되지만, ②서면질문의 경우 질문 대상기관은 좁은 의미의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사법부·감사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하고⁴⁾, ③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으며, ④소위원회의 경우 법률안·예산안·청원 등의 심사 시 정부측 담당급의 실무자도 배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진술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국무위원등 정부측 관계자 진술의 신뢰성 제고라는 기대효과와 함께 허위 진술에 따른 제재 대상 범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7, p.581

문 의 처
02)6788-5014